

전과 규정

제정 2000. 9. 1. 개정 2001. 9. 1.
전문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개정 2013. 11. 15. 개정 201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"본 대학"라 한다)의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2조(전과신청자격) ① 다음 각 1호,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3.11.15.>

1. 학부/학과의 통·폐합으로 인하여 전과가 필요한 복학자 또는 재입학자 <개정 2013.11.15.>
 2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과를 원하는 재학생 중 1개 학기 이수자는 15학점 이상, 2개 학기 이수자는 40학점 이상, 3개 학기 이수자는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<개정 2013.11.15.>
- ② 전항의 제2호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2년제 학과 재학생 중 3개 학기 이상 수료자(단, 3년제 학과의 경우 4개 학기 이상 수료자)는 전과신청 할 수 없다. <개정 2013.7.1., 2013.11.15.>

제3조(전과시기) ① 전과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 개강 후 지정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② 전과는 학기단위로 실시한다.

제4조(제출서류) 전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.

1. 전과원 1부<별지 제1호 서식>
2. 성적증명서 1부
3. 삭제 <2013.7.1.>
4. 삭제 <2013.7.1.>
5. 삭제 <2013.7.1.>
6. 학점인정신청서 1부<별지 제2호 서식>

제5조(전과허가) ① 전과 여석은 희망하는 전과의 입학정원의 10% 범위를 넘지 않는다.

② 전과 신청인원이 전과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허가한다.

1. 평점평균이 높은 자
2. 저학년인자

제6조(전과 제한) ① 전과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② 산업체위탁생 및 재입학자(학부/학과 통·폐합으로 인한 재입학자 제외)의 경우와 직전학기 학사 경고대상자는 전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4.3.1.>

제7조(전과 절차) ①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학부(학과) 지도교수, 학부(학과)장의 상담과 전과를 희망하는 학부(학과)장의 상담을 거쳐 구비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

다. <개정 2014.3.1.>

② 교학처는 전과 서류를 검토한 후 교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1., 2013.11.15., 2014.3.1.>

③ 교학처는 전과 희망자 허가 여부를 개별 통보하고, 해당 학부(학과)에도 이를 통보한다. <개정 2014.3.1.>

제8조(등록) 전과 허가자는 전입학부(학과)의 해당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전과 학부(학과)) 전과는 학부(학과)에 상관없이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.

제10조(전과 학점인정) ① 전과 허가자의 학점 인정은 전과 직전까지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인정한다.

② 전과자는 전입학부(학과) 2년제 학점 56학점 이상, 3년제 84학점 이상 전공과목을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